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경제거래관계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리해하고 그에 대한 법적규제사업을 잘하는것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경제거래관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면서도 그의 안정성과 공고성을 철저히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법률적문제의 하나이다.

민사법률행위는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의 설정이나 그의 변경 및 소멸을 목적하는 당 사자들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행위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형식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공고성을 철저히 보장하려면 그들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여야 할뿐아니라 해당 법적효력이 확고히 담보될수 있도록 그 형식이 규제되여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는 무엇보다먼저 말로 하는 형식과 서면으로 하는 형식이 있다.

말로 하는 형식은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의 방법으로 제의와 그에 따르는 동의(혹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것을 말한다. 말로 하는 형식을 일명 구두형식이라고도 한다. 이러 한 구두형식에는 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 대화뿐아니라 전화를 통한 대화와 대중을 상대 로 하는 의사표명 등이 속한다.

구두형식은 그 어떤 특별한 수단의 리용이 없이 임의의 조건에서 할수 있으며 경제 거래관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이런것으로 하여 민사법실천에서 구두형식은 그 형식상측면에서 볼 때 다른 민사법률행위들에 비하여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그러나 구두형식은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기록을 남기지 않는것으로 하여 해당 행위후 의사표시내용과 관련한 당사자들사이의 의견상이(분쟁)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따라세울수 없는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따라서 구두형식은 해당 경제거래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경제생활관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설정되는 민사법률관계들에 한하여서만 허용하고있다.

구두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상업기관이나 지역시 장을 통한 상품매매계약이나 공민들사이에 생활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결하는 빌 리기, 보관, 위탁계약 등을 들수 있다.

서면으로 하는 형식은 당사자들이 의사표시한 내용을 기록문건으로 남기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서면으로 하는 형식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이다.

서면으로 하는 형식의 민사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문자로 된 계약서나 전보, 텔렉스, 확스 등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구두형식과는 달리 서면형식의 민사법률행위는 그 내용의 객관적기록을 일정한 기간 보존유지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행위당사자들이 자기가 지니고있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부인할수 없게 하는 위력한 증거수단으로 리용될수 있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서면형식을 통한 민사법률행위는 민사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거래의 안정성은 당사자들사이에 이루어진 민사법률행위의 목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행위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고 그 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문제들을 옳바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장되게 된다.

서면형식을 리용하면 민사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서 고착시킬수 있으므로 그것은 곧 행위당사자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민사분쟁사건 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립증수단으로 된다.

서면형식의 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법적으로 고착 시키는것이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성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많 이 활용되게 된다.

서면형식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반경제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임의로 쓸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이다. 그것은 서면형식자체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행위의 결과를 신중하게 타산하여 제기하게 하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후에 부정할수 없는 증거로 고착시키게 하기때문이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는 다음으로 민사법률행위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공증이 있다.

공증형식은 민사법률행위당사자들이 의사표시한 내용을 국가의 공증기관에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등록인정받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공증형식은 서면형식의 민사법률행위에 국가적인정을 가하여 그의 증거력을 더욱 강화하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이라고말할수 있다.

공증형식은 법에 직접 기초할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수도 있다. 공증형식은 우선 민사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고착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이 직접 정한데 따라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이다.(의 무적공증)

공화국민법은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개별적당사자들의 리해관계에 미치는 정도에 근거하여 그것이 국가적리익이나 개별적당사자들의 리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공증을 의무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실례로 공화국민법에서는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륜전기재와 같이 중요하다고 인 정되는 대상에 대한 거래인 경우 그것이 설사 개별적공민들사이의 이루어지는 민사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있다.

공증형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민사법률행위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일정한 법률사실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공증은 서면형식의 민사

법률행위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법이 공증을 의무적인 절차로 규정한 민사법률행위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당사자들은 의사표시내용에 대한 공증신청을 공증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민사법률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한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문건을 받아야 한다.

공증형식으로 이루어진 민사법률행위는 공증사실에 근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지며 공 증사실은 민사법률행위의 법적효력과 그 내용에 대한 립증에서 우선적인 인정을 받는다.

이처럼 공증형식의 민사법률행위는 해당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민사 적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민사분쟁사건을 옳바로 해결하고 그의 정확한 리행을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담보로 된다.

공증형식은 또한 민사관계당사자들이 해당 행위의 중요성을 자신이 판단한데 기초하여 임의로 선정하고 실현할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이다.

민사법률행위가 당사자들자신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초하는것 으로 하여 해당 행위의 중요성정도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보호방 법도 당사자들자신의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선정하는것을 허용한다.

행위당사자들은 비록 법에서 지적되지 않은 임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공증형식을 활용할수 있다.

공증은 해당 법률사실에 대한 공증기관의 검토확인에 기초한 법률행위인것으로 하여 신빙성있는 증거로서의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이 곧 재판소의 사실확정을 위한 기초로서 의 의의는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공증사실 에 대한 증거적의의를 다시 심의확인한데 기초하여 내려져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대한 상대방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침묵) 그에 대한 법적효력문제를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제의)에 대한 상대방당사자의 침묵을 그에 대한 동의의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의사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한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의 의사표시(제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행위를 일명 묵 시형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그 어떤 의사표시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한 당사자(제의자)의 의사표시가 객관화되였다면 법은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무효 또는 유효)을 반드시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효력은 상대방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동의나 반대)에기초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공화국민법은 민사법률행위설정의 중요성정도와 구체적특성을 고려한데 기초하여 일 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가 침묵을 지키는 경우들에 따르는 법적효력문제를 강행적으로 예견하고있다. 즉 제의에 대한 침묵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중의 어느 하나 의 의사표시를 법이 강행적으로 선택적용한다.

묵시형식과 관련하여볼 때 공화국민법은 일반적으로 제의에 대한 침묵을 반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한 당사자의 침묵행위는 상대방당사자의 제의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설정이 국가적리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해당 경제거래관계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에 한해 서는 당사자의 침묵행위를 동의의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을 직접 발생시키 도록 규제하고있다.

실례로 공화국민법은 자재공급계약이나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자법인이 법이 정한 기간내에 수요자의 제의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것을 동의의사로 인정하고 그(제의)에 따르는 법적효력과 효과를 발생시키고있다. 이것은 계획적인 계약체결과 관련한 당사자의 태공행위가 곧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화국민법은 행위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수행된 부분적행위능력자의 행위를 취소시 키려는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법이 정한 기간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침묵을 동의의사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해당 민사거래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 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우리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민사법률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